

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[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]

① 내국인[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의
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[이하 이 조에서 “상시근로자” 라 한다]의 수가
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
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[**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**]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
소득세[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]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8. 12. 24., 2019. 12. 31., 2020. 12. 29., 2021. 3. 16., 2021. 12. 28.>

1. 청년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 근로자,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[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등상시근로자” 라 한다]의
증가한 인원 수[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]에
400만원[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100만원[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200만원]]을 곱한 금액.

다만,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**수도권 밖의 지역**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
[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]에 대해서는 500만원[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300만원]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2.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[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] × 0원 [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]

가. 수도권 **내**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: 700만원

나. 수도권 **밖**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: 770만원

② 제①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**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**
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①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
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①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**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24., 2019. 12. 31., 2021. 3. 16.>

③ 삭제 <2018. 12. 24.>

④ 제①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24.>

⑤ 제①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**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**
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
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②항을 적용한다.
다만,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1. 3. 16.>

⑥ 제⑤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
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[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]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[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]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<신설 2021. 3. 16.>

⑦ 제⑥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
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②항을 적용한다. <신설 2021. 3. 16.>

⑧ 제①항, 제②항 및 제⑤항부터 제⑦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3. 16.>

[본조신설 2017. 12. 19.]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[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]

- ① 법 제29조의7제①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” 이란 제29조[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]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.
- ② 법 제29조의7제①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” 란 제23조[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]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[이하 이 조에서 “상시근로자” 라 한다]를 말한다.
- ③ 법 제29조의7제①항제1호에서 “청년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 근로자,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” 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[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등 상시근로자” 라 한다]을 말한다. <개정 2019. 2. 12., 2021. 2. 17., 2021. 4. 6., 2022. 2. 15.>
 1.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.
다만,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[6년을 한도로 한다]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.
 - 가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
 - 나.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
 - 다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
 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 3.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
- ④ 삭제 <2021. 2. 17.>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[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]

⑤ 법 제29조의7제②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,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2. 12., 2020. 2. 11.>

- 법 제29조의7 제①항에 따라 **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**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**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**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[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①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]
가. **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**: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

1) **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**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[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**청년등**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[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] - **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**]

X
청년등 증가 **청년외 증가**
(법 제29조의7 제①항 제1호의 금액 - 같은 ①항 제2호의 금액)

+
청년등 증가
[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X 법 제29조의7 제①항 제1호의 금액]

2) **그 밖의 경우**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[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**청년등**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[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] X 법 제29조의7 제①항 제1호의 금액]

+
청년외 증가
(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**청년등 상시근로자 외**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[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] X 법 제29조의7 제①항 제2호의 금액)

나. **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**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**청년등**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[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]

X
청년등 증가 **청년외 증가**
(법 제29조의7 제①항 제1호의 금액 - 같은 ①항 제2호의 금액)

2.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 제①항에 따라 **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**이 속하는 **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**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(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,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①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)

가. **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**: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

1)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[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(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 - **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**]

$$\begin{aligned} & \text{X} \quad \text{청년등 증가} \quad \text{청년외 증가} \quad \star \\ & [\text{법 제29조의7 제①항 제1호의 금액} - \text{같은 ①항 제2호의 금액}] \times \text{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} \quad \star \\ & + \quad \text{청년등 증가} \quad \star \\ & [\text{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} \times \text{법 제29조의7 제①항 제1호의 금액} \times \text{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}] \quad \star \end{aligned}$$

2) 그 밖의 경우 :

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(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

나. **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**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(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

$$\begin{aligned} & \text{X} \quad \text{청년등 증가} \quad \text{청년외 증가} \quad \star \\ & [\text{법 제29조의7 제①항 제1호의 금액} - \text{같은 ①항 제2호의 금액} \times \text{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}] \quad \star \end{aligned}$$

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범인세로 납부

- ⑥ 제⑤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③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. <개정 2020. 2. 11.>
- ⑦ 법 제29조의7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,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(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)로 한다. <개정 2019. 2. 12.>

1. 상시근로자 수 :

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

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

2.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:

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

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

⑧ 제⑦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[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]제⑪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.

⑨ 제⑦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[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]제⑬항을 준용한다.

⑩ 법 제29조의7제①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2. 12.>

[본조신설 2018. 2. 13.]